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세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41

발의연월일: 2025. 3. 4.

발 의 자:오세희·이병진·허성무

장철민 · 김태선 · 전진숙

김동아 · 김현정 · 김우영

이강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하여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매년 700 곳 이상 주유소가 휴ㆍ페업을 신고하였음.

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,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하고 있으나,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장기간 시설을 방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 위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, 폐업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상당수 주유소가 부득이 폐업 대신 휴업 신고를 하고 있음.

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 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 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로하고,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 및 사업전환 지원의 기준, 방법·절차 등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<u><신 설></u>			제12조의2(석유판매업자에 대한
			폐업 지원) ① 산업통상자원부
			<u>장관,</u>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
			<u>군수·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</u>
			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
			정하는 사유로 제12조제2항에
			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
			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
			거나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
			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
			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지원하
			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
			<u>행할 수 있다.</u>
			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
			지급 및 사업전환 지원의 기준,
			<u>방법·절차 등 시책의 수립·</u>
			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			<u> 령으로 정한다.</u>
제12조의2(공제조합의	설립)	(생	<u>제12조의3</u> (공제조합의 설립) (현
략)			행 제12조의2와 같음)
<u>제12조의3</u> (공제조합의	사업)	(생	<u>제12조의4</u> (공제조합의 사업) (현
략)	•	, 3	행 제12조의3과 같음)
<u>제12조의4</u> (기본재산의	조성)	(생	<u>제12조의5</u> (기본재산의 조성) (현

략)

행 제12조의4와 같음)